의안번호	2208094
의 뢰 인	허종식의원
회 답 일	2025.05.02.
추계번호	25C081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 (개설 등)	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(제2항) 5.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의료원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- (개정)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'공기업' 추가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3조 (개설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설 등(안 제33조)

○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기관에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, 공기업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공기업의 신규 의료기관 설립 여부,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
- 개정안은 제안 취지로 대형 항공사고,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으나, 개정안은 병원 개설

이 가능한 자에 '공기업' 전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현행법 제33조제2항 각 조에 따른 2025년 3월 말 기준 의료기관 개설 현황은 [표 1]과 같음

[표 1] 의료기관 개설 현황

(단위: 개소)

구분		총계	상급종합	종합병원	병원	요양병원	정신병원	의원	치과병원	치과의원	조산원	한방병원	한의원
계		75,155	47	330	1,418	1,334	262	36,986	244	19,162	16	588	14,768
국립		133	1	1	5	0	6	90	1	18	0	0	11
공립	시도립	58	0	2	5	26	8	9	1	2	0	0	5
	시군구립	54	0	1	3	45	1	1	0	0	0	0	3
	지방 의료원	39	0	31	5	2	0	0	0	0	0	0	1
	기타공립	53	10	18	7	4	0	5	6	2	0	1	0
법인	학교	135	30	36	8	3	0	16	10	3	0	21	8
	특수	23	1	8	1	2	0	7	0	4	0	0	0
	종교	3	0	0	1	0	0	0	0	0	0	0	2
	사회 복지	67	1	1	12	12	10	27	0	1	0	0	3
	사단	141	0	0	4	2	0	107	0	23	0	0	5
	재단	174	2	21	18	12	5	68	2	10	0	22	14
	회사	133	0	0	0	0	0	116	0	12	0	0	5
	의료	1,272	2	136	259	528	122	129	13	15	0	41	27
	소비자생활 협동조합	98	0	0	1	13	0	53	0	18	0	1	12
	사회적 협동조합	60	0	0	0	0	0	30	0	12	0	0	18
개인		72,635	0	74	1,072	685	110	36,307	208	19,023	16	502	14,638
군 병원		77	0	1	17	0	0	21	3	19	0	0	16

자료: 보건복지부

❑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